

변경대비표

1. 대상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2. 시행일 : 2023 년 2 월 15 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변경 대비표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p>제 12 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 동안 <u>매매, 그 밖의 거래</u>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 항 제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p> <p>1. ~3. <생략></p>	<p>제 12 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② <좌동>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 동안 <u>금융투자상품의 거래</u>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 항 제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p> <p>1. ~3. <좌동></p>	<p>금투업규정 제 4-37 조 반영</p>
<p>제 22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p>	<p>제 22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u>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u>을</p>	<p>약관변경시 공시·통지의무 확대(금감원요청)</p>

<p>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p> <p>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u>불리한 것일 때에는</u>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u>통지</u>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⑤ <생략></p>	<p>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p> <p>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u>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u>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u>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u>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⑤ <좌동></p>	
<p><신설></p>	<p><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